

# 서울특별시 강서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김현희 의원 대표발의)

|          |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|
| 의안<br>번호 | 2018-57 |
|----------|---------|

발의연월일 : 2018. 10. .

발 의 자 : 김현희, 송순효, 황영호, 김용원  
이의걸, 송영섭, 정정희, 최동철  
강선영, 이종숙, 김동협, 김선경  
이충현, 박주선, 박성호, 김성한  
이충숙, 신낙형, 경기문

## 1. 의결주문

서울특별시 강서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에서 출산 의지를 가진 난임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, 다른 조례와의 관계 (안 제1조 ~ 안 제3조)
- 나. 지원대상 (안 제4조)
- 다. 한방난임치료 지원 등 추진사업 (안 제5조)
- 라. 사업의 위탁 (안 제6조)
- 마. 중복지원 제한 및 지원금 환수 (안 제7조 ~ 안 제8조)
- 바. 사업종사자의 비밀엄수 및 시행규칙 (안 제9조 ~ 안 제10조)

#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모자보건법」 제2조, 제3조, 제11조, 「저출산·고령사회  
기본법」 제10조, 「한의학 육성법」 제2조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예산조치

다. 합 의 : 건강관리과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(2018. 10. 29. ~ 11. 3.)결과 : 의견없음

2) 제정안 및 관계법령 : 붙임

## 서울특별시 강서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의 목적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난임”이란 「모자보건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.
2. “한방난임치료”란 「한약육성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 극복을 위한 한약투여, 침구치료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.

**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**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4조(지원대상)**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소를 둔 난임 진단을 받은 남성과 여성으로,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법적부부로 한다. 단,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.

**제5조(사업추진 등)**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,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
2. 한방난임치료 상담, 교육 및 홍보
3. 그 밖에 한방난임치료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.

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**제6조(위탁)**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**제7조(중복지원 제한)**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**제8조(환수)**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.

**제9조(비밀누설의 금지)** 제5조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**제10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【관계 법령】

### □ 모자보건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1. "난임(難妊)"이란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.
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·증진하기 위한 조사·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1조(난임극복 지원사업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난임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
2.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
3.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
4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### □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

제10조(경제적 부담의 경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·출산·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·출산·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## □ 한의약 육성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한의약"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(韓醫學)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·개발한 한방의료행위(이하 "한방의료"라 한다) 및 한약사(韓藥事)를 말한다.